



(주)지누스

윤리경영 실천지침

지누스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 판단의 기준



목 차

『I. 지누스 섬김의 리더십』.....	5
『II. 윤리경영 실천지침.....	6
1. 총칙.....	6
1.1 지누스 윤리경영.....	6
1.2 실천지침의 목적.....	6
1.3 용어의 정의.....	6
1.4 기준의 적용범위.....	6
2. 고객을 위한 구성원의 윤리 실천.....	7
2.1 [고객가치 제고] 고객의 기대 수준을 뛰어넘는 가치를 제공한다.....	7
2.2 [고객약속 준수] 고객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7
2.3 [고객정보 보호] 고객정보를 소중히 보호해야 한다.....	7
3. 파트너사와의 윤리 실천.....	8
3.1 [공정한 기회 제공]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파트너사의 경쟁력을 최고 수준으로 키워야 한다.....	8
3.2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 파트너사와의 상생은 상호존중 위에서 존속·발전되어야 한다.....	8

3.3 [파트너사 정보보호] 파트너사와 거래 중 취득한 정보는 보호되어야 한다.....	8
4. 경쟁사와의 윤리 실천 지누스는 모든 사업활동에서 해당 지역의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정당한 방법을 통하여 경쟁 우위를 확보한다.....	8
4.1 [자유 경쟁의 추구]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경쟁 우위를 확보한다.....	8
4.2 [법규의 준수] 모든 사업활동은 해당 국가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거래의 관습을 존중하여 수행한다.....	9
5. 회사에 대한 윤리 실천.....	9
5.1 [회사 자산 및 정보보호] 회사 자산과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9
5.2 [예산 사용] 아무리 사소한 예산이라도 정직하게 사용해야 한다.....	10
6. 구성원에 대한 윤리 실천.....	10
6.1 [상호 존중] 동료와의 상호존중으로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	10
6.2 [건전한 관계형성] 철저히 공과 私를 구분하여 두터운 신뢰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10
6.3 [성희롱 금지] 양성평등적 사고를 기반으로 건전한 동료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서로 노력해야 하며, 사회통념과 회사 기준에 어긋나는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0
6.4 [구성원 정보보호] 회사는 구성원에 대한 정보를 소중하게 보호해야 한다.....	11
7. 나를 위한 윤리 실천.....	11

7.1 [성실한 업무수행] 순간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평생 후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1
7.2 [이해상충 해결] 이해상충에 대해서는 스스로에게 엄격해야 한다.....	11
7.3 [법규 및 규정 준수] 법규 및 회사규정을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12
8. 실천지침의 준수 및 운영.절차.....	12
8.1 실천지침의 준수.....	12
8.2 실천가이드 운영.....	13
8.3 상담·신고 접수 시 처리절차.....	13
8.4 상담·신고자 보호.....	14
8.5 금품·선물 수취시 처리 절차.....	14
8.6 윤리위원회의 운영.....	14

『 I. 지누스 섬김의 리더십 』

- 지누스의 리더는 자기의 직책이 섬김을 위한 도구임을 명심한다.
- 지누스의 리더는 어떠한 경우에도 큰 소리로 직원을 질책하거나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으며, 항상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 지누스의 리더는 국적/나이/성별로 수치심을 느끼거나 차별하는 언행을 하지 않고, 글로벌 매너를 갖추어 겸손하게 행동한다.
- 지누스의 리더는 끝까지 경청하고 신중하게 판단한다. 회의에서 직급과 상관없이 모든 참석자들이 한 번 이상씩 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 지누스의 임직원은 나와 다른 의견을 존중하며, 대화 시에는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경청하도록 한다.
- 지누스의 리더는 본인의 실수를 발견하면 즉시 인정하며 진심을 담아 사과할 수 있어야 한다.
- 지누스의 리더는 업무 수행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어도 변명하지 않고, 책임감을 갖고 동료, 팀원들과 함께 최선의 해결방안을 찾도록 한다.
- 지누스의 리더는 항상 웃으며 먼저 인사한다.
- 지누스의 리더는 나의 경험과 지식을 팀원들에게 전수하며, 업무지시를 하면서는 그 배경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하도록 노력한다.
- 지누스의 리더는 모든 비용을 투명하게 관리하며, 거래처 사람들에게 선물/금전/음식 대접을 받지 않고 필요한 경우 회사 비용으로 대접한다.

『Ⅱ. 윤리경영 실천지침』

1. 총칙

1.1 지누스 윤리경영

지누스의 모든 임직원은 '섬김의 리더십'을 기반으로 하여 회사의 윤리규정을 준수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도 윤리적 소명을 다하여야 한다.

1.2 실천지침의 목적

본 윤리경영 실천지침(이하 "실천지침")은 (주)지누스 구성원이 회사의 윤리규범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주)지누스 구성원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3 용어의 정의

1.3.1 금품: 금전(현금, 상품권, 이용권, 복권 등), 물품 등 경제적 이익

1.3.2 향응·접대: 술자리, 골프, 공연, 국내외 관광 및 출장, 오락 등

1.3.3 편의: 교통, 숙박, 관광안내 및 행사지원 등 금품 또는 향응 이외의 지원

1.3.4 금전거래: 금전대차, 공동투자, 대출보증, 도박 등

1.3.5 친·인척: 친가4촌이내, 처/외가 4촌이내의 인적 관련자

1.3.6 파트너사: 당사에 원·부자재, 인력, 물류서비스 등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을 의미합니다.

1.3.7 이해관계자: 구성원의 업무 관련 행위나 의사결정으로 그 권익에 영향을 받는 대리점, 판매점, 협력업체 등 사내/외 관련 법인·단체, 정부기관 및 그들과 관계된 개인

1.4 기준의 적용범위

본 윤리경영 실천지침은 (주)지누스와 (주)지누스의 해외자회사, 해외자회사의 자회사(이하 모두를 '지누스'로 총칭함) 등에 재직중인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되며, 지누스와 계약 관계에 있는 거래처, 파트너사, 에이전트, 업무 대리인, 기타 계약 업체 및 임시 고용 근로자 등이 윤리서약서에 서명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실천사항

- 윤리경영 실천지침을 통해 윤리경영의 기반이 되는 '섬김의 리더십'과 '행복경영의 사명'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추구함으로써 '정직하고 투명한 기업', '공정한 경쟁을 지향하는 기업', '고객중심의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이 되고자 한다.
-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존중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와 함께 공동의 성장을 추구한다.
-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국가와 지역의 제반 법규와 도덕을 준수한다.
- 예의범절과 에티켓을 준수하여 지누스 구성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의를 지킨다.
- 모든 구성원은 윤리경영을 기반으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창출한다.

2. 고객을 위한 구성원의 윤리 실천

2.1 [고객가치 제고] 고객의 기대 수준을 뛰어넘는 가치를 제공한다.

2.1.1 구성원은 기대 수준 이상의 품질을 가진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이 안심하고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고객 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1.2 구성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2.2 [고객약속 준수] 고객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2.2.1 구성원은 고객에게 허위/과장된 사실을 전달하거나 고객에게 끼칠 수 있는 손해를 은폐하지 않아야 한다.

2.2.2 구성원은 고객의 정당한 요구와 합리적인 제안을 적극 수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3 [고객정보 보호] 고객정보를 소중히 보호해야 한다.

2.3.1 구성원은 고객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준수하고, 업무수행에 있어 고객정보를 수집·사용할 경우에 법규가 요구하는 사항을 기준 이상으로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3. 파트너사와의 윤리 실천

3.1 [공정한 기회 제공]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파트너사의 경쟁력을 최고 수준으로 키워야 한다.

3.1.1 구성원은 담당 업무와 관련된 파트너사에게 공정한 거래의 기회를 부여하고, 스스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공정거래를 해치는 요구 또는 언행을 하지 않아야 한다.

3.2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 파트너사와의 상생은 상호존중 위에서 존속·발전되어야 한다.

3.2.1 구성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이나 선물 등을 수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금품수수가 인정된다.

가. 홍보 및 행사 기념품: 파트너사 또는 이해관계자의 로고나 명칭이 표시되어 있으며, 그 가격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물품

나. 경조금: 상부상조의 취지에 따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금품 (경조사를 이해관계자에게 공지하는 행위는 금지)

3.2.2 구성원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술자리, 골프, 해외출장/관광 등 향응·접대 및 개인적 편의를 제공받아서 아니 되며,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받아서도 아니 된다.

3.2.3 구성원은 파트너사 및 이해관계자와 업무 외 접촉할 경우에 상사에게 보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3.3 [파트너사 정보보호] 파트너사와 거래 중 취득한 정보는 보호되어야 한다.

3.3.1 구성원은 파트너사와의 거래 전/후에 취득한 파트너사 관련 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지 않으며 거래 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경쟁사와의 윤리 실천

4.1 [자유 경쟁의 추구]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경쟁 우위를 확보한다.

4.1.1 경쟁사 정보는 사회적 비난을 받지 않는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고, 정당하게 활용한다.

4.1.2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은 정당한 원칙과 방법에 따라 실행한다.

가. 경쟁사의 유·무형 자산을 도용하거나 무단 침해하지 않는다.

나. 경쟁사를 비방하거나 약점을 악용하지 않는다.

4.1.3 부당한 담합으로 타 사업자 및 고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4.1.4 공정거래와 관련한 법규 및 지침 등을 숙지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관련 부서에 알린다.

4.2 [법규의 준수] 모든 사업활동은 해당 국가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거래의 관습을 존중하여 수행한다.

4.2.1 해당 지역의 관련 법규와 상관습을 준수하면서 정당한 방법으로 경쟁한다.

4.2.2 특히 국내외의 부정경쟁 방지를 위한 제반 법규를 숙지하고 준수한다.

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1) 부정한 방법을 통해 편의나 특혜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공직자 등에게 청탁하거나 금품을 제공 또는 금품제공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

나.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 공직자에 대한 뇌물방지법(해외 뇌물거래 방지법)

1) 국제상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직·간접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업무와 관련된 뇌물을 약속,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등을 금지

다. 단,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법령 등에서 인정하는 정상적인 행위 등은 예외로 한다.

5. 회사에 대한 윤리 실천

5.1 [회사 자산 및 정보보호] 회사 자산과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5.1.1 구성원은 회사의 유·무형자산 및 영업비밀 등의 정보를 보호하고 정당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가. 구성원은 회사의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나. 구성원은 업무상 취득한 회사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 구성원은 회사 정보와 영업비밀을 사전 승인 없이 내·외부에 누설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회사의 정보보안 정책에 의거 정보보호, IT보안 및 고객정보 보호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회사가 그 행위를 점검할 경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1.2 구성원은 회사에 손실을 가져올 상황이 발생하거나 손실발생의 개연성이 있을 경우에 즉시 그 사실을 회사에 보고하고, 손실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5.2 [예산 사용] 아무리 사소한 예산이라도 정직하게 사용해야 한다.

5.2.1 구성원은 업무 목적 외 또는 사적인 목적으로 회사비용을 사용하지 않고, 경비 집행 및 정산 시 허위 증빙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6. 구성원에 대한 윤리 실천

6.1 [상호 존중] 동료와의 상호존중으로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

6.1.1 구성원은 폭언이나 폭행 등의 무례하거나 위압적인 행위,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 또는 이로 오해 받을 만한 언행을 하지 않아야 한다.

6.1.2 구성원은 성별, 학연·지연, 결혼·임신, 종교, 국적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는 언행을 하지 않아야 하며, 상하간 또는 동료를 평가할 때 사사로운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아야 한다.

6.2 [건전한 관계형성] 철저히 공과 私를 구분하여 두터운 신뢰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6.2.1 구성원은 부적절한 금전거래, 업무와 무관한 사적 부탁이나 지시 등 건전한 관계 형성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6.3 [성희롱 금지] 양성평등적 사고를 기반으로 건전한 동료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서로 노력해야 하며, 사회통념과 회사 기준에 어긋나는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6.3.1 함께 일하는 동료나 거래처, 협력 업체 근무자 등 다른 사람에게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인 상처를 줄 수 있는 언행을 해서는 아니되며, 이러한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6.3.2 성희롱은 신체 접촉에 의한 행위뿐 아니라, 언어적, 시각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포함하며, 회사 내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 가. 입맞춤, 포옹, 뒤에서 껴안는 행위 및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만지는 행위 또는 이를 강요하는 행위
 - 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또는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성적인 사실을 묻거나 그러한 사실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 다. 회식에 대한 참석을 강요하거나 회식 자리에서 옆자리에 앉아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 라. 성적인 관계를 강요 또는 제안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마.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등
- 6.3.3 특히 직급 또는 거래상 관계 등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더욱 엄중한 책임이 부과됨을 알아야 한다.
- 6.3.4 성희롱 등의 행위를 당하거나 목격한 임직원은 즉시 회사 내 윤리경영 담당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6.4 [구성원 정보보호] 회사는 구성원에 대한 정보를 소중하게 보호해야 한다.

- 6.4.1 회사는 구성원의 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준수하고 구성원의 동의를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사전에 수집·관리·사용에 대한 동의서를 득해야 한다. 또한, 퇴사한 직원의 개인정보는 근로기준법에서 지정한 기일 이내에 파기하여야 한다.

7. 나를 위한 윤리 실천

7.1 [성실한 업무수행] 순간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평생 후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7.1.1 구성원은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정직과 신뢰의 원칙에 입각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7.1.2 구성원은 각자의 언행이 회사의 신뢰와 명성에 직결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7.2 [이해상충 해결] 이해상충에 대해서는 스스로에게 엄격해야 한다.

- 7.2.1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겸직, 겸업, 부업 등을 하지 않는다. 단, 회사의 업무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사전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7.2.2 구성원은 회사와 이해상충으로 인해 회사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은 유의하여야 할 이해상충관계의 예시이나, 모든 이해상충관계를

열거한 것이 아니므로 실제 상황에서는 엄격한 판단과 적용이 요구된다.

가. 행위가 금지되는 이해상충의 예시

- 1) 구성원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회사의 자산이나 경영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
 - 회사가 투자 또는 매수, 임차하려고 하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 투자하는 행위
 - 회사정보를 이용하여 이해관계자에게 본인 또는 제3자의 고용, 취업 추천 등을 보장하는 행위
- 2) 구성원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파트너사와 금전대차, 공동투자, 대출보증, 도박 등 금전거래를 하는 행위
- 3) 구성원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파트너사로부터 과도한 보상을 받는 행위

나.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이해상충의 예시

- 1) 구성원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회사, 파트너사 및 경쟁업체와 거래하는 행위
- 2) 구성원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의 직위를 겸임하는 행위
- 3) 구성원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파트너사의 주식이나 채권 등을 보유하는 행위

다. 기타 불가피하게 구성원이 회사와 이해상충관계를 형성한 경우 윤리경영 담당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필요 시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구성원의 가족 및 친인척, 지인이 회사나 파트너사와 거래하는 경우에도 윤리경영 담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3 [법규 및 규정 준수] 법규 및 회사규정을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7.3.1 구성원은 경영활동, 준수의무, 안전·환경 등에 대한 모든 관련 사규, 국내외 법규 및 국제협약을 준수하여야 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부당한 내부거래, 돈세탁,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

8. 실천지침의 준수 및 운영 절차

8.1 실천지침의 준수

8.1.1 모든 구성원이 윤리규범과 실천지침을 준수할 책임이 있으며,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직의 리더 또는 인사팀에 질의·상담하여 그 해석에 따라 행동한다.

8.1.2 조직의 리더는 소속구성원과 업무상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회사의 윤리규범과

실천지침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솔선하여 준수함으로써 모범을 보여야 한다.

8.1.3 구성원은 매년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서약서를 작성하고, 서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8.2 실천가이드 운영

8.2.1 윤리경영 담당직원은 실천지침을 준수하는데 있어 구성원들의 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윤리경영 실천가이드'를 제정·운영할 수 있으며, 부문 이하 단위 조직은 해당조직의 특성을 고려한 '구성원행동준칙', '행동강령' 등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8.3 상담·신고 접수 시 처리절차

8.3.1 누구든지 구성원이 본 규정 및 기타 사회상규를 위반한 비윤리적 행위를 인지하게 된 경우, 즉시 지누스 내부신고 메일 (ethics@zinus.com)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다.

8.3.2 제보는 실명을 원칙으로 하며, 익명 제보의 경우 명확하고 사실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만 조사를 수행하며 개인에 대한 음해, 허위신고, 모함성 제보는 조사하지 않는다.

8.3.3 회사에서는 신고내용을 비밀로 하여 철저하게 조사를 진행할 것이며, 조사결과 신고내용이 허위임이 확인되고 위반행위 신고자가 허위사실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신고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가. 경미한 사안인 경우 : 주의 촉구

나. 중대한 사안인 경우 : 윤리위원회의 심의 후 인사 조치

8.3.4 윤리경영 담당직원은 구성원과 관련된 윤리경영 관련 상담·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가. 상담·신고된 사안이 추가적인 사실확인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접 조사하거나 해당업무 담당 부서에 위임할 수 있다.

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인사 및 징계규정 등 회사의 제반 사규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8.3.5 파트너사 관련 상담·신고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가. 회사는 사안의 중대성, 사회 및 회사 등에의 영향 정도를 감안하여 해당 파트너사와의 거래물량 제한, 계약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회사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영향 정도가 경미한 경우 재발방지에 대한 의지 등을

고려하여 해당 파트너사 및 피신고자 등에 대한 선처를 결정할 수 있다.

8.3.6 윤리경영 담당직원은 윤리규범 관련 상담·신고 내역 및 처리 결과를 접수일자 순으로 기록하여 저장매체에 보관한다.

8.4 상담·신고자 보호

8.4.1 회사는 상담·신고자, 조사협조자의 신분 및 상담·신고 내용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며, 상담·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8.4.2 상담·신고자는 윤리경영 담당 직원에게 신분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직원의 부서장과의 협의를 통해 부서이동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8.4.3 구성원은 윤리경영 담당 직원에게 상담·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이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 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인사규정에 의거 조치한다.

가. 면책이 가능한 예외조항

- 심각한 인명 안전사고 및 사업중단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
- 무고 및 음해, 심각한 부정사건, 회사 기밀유출 및 자료 위변조, 언론 보도 사항 등

8.4.4 상담·신고자가 부정행위에 가담하였으나, 그 사실을 상담·신고한 경우 회사는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 시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

8.5 금품·선물 수취시 처리 절차

8.5.1 불가피하게 금품/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 후 상사에게 보고하고, 그 경과를 윤리경영 담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가. 반송 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반송하여야 한다.

나. 반송이 곤란하거나 부패, 변질 등의 사유로 반송이 불가능한 경우

- 회사의 지역 자원봉사단(본사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물품을 전달한다.
- 지역 자원봉사단(본사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은 해당 물품을 결연단체 등에 기증한다.
- 승진, 이동 등과 관련된 난·화분은 윤리경영 담당부서에서 일괄 처분하여 그 수익금을 결연단체 등에 기증한다.

8.6 윤리위원회의 운영

8.6.1 회사는 별도의 윤리위원회를 두며, 윤리위원회는 회장 및 유관부서장으로 구성한다.

8.6.2 윤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확인된 위반행위자는 인사위원회의 내부절차에 따라 징계 처분한다.

8.6.3 윤리위원회는 중대한 위반 사안에 대하여 그 근본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윤리경영을 위한 실천 서약서 (임직원용)

본인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구성원을 존중하고, 공정거래를 통해 협력업체와 상호 발전하여, 경쟁사와 정정당한 경쟁을 통해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정직하게 제공하고, 주주와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2. (주)지누스 임직원으로서 조직내 윤리경영 문화를 정착시키고 실천하기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3.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규정을 몰랐다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음을 이해하고, (주)지누스 윤리규범 및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이를 위반하는 어떠한 부당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4. 업무 수행 과정에서 회사 임직원의 불공정 거래 및 부정·비리 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나, 거래처로부터 부정·비리 행위를 제안받는 경우 즉시 회사에 알리겠습니다.
5. (주)지누스 윤리규범 위반 행위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조사 진행 시, 회사가 요청하는 관련된 자료 제출 등을 포함한 모든 협조의무를 반드시 준수하겠습니다.
6. 만약 이 서약서를 위반할 경우 이에 따르는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부서명:
성 명: (인)

윤리경영을 위한 실천 서약서 (파트너사용)

당사는 귀사와 거래를 함에 있어서 귀사의 윤리경영의 실천에 적극 동참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거래함으로써 상호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귀사와 거래에 있어서 어떠한 불공정 거래 및 부정·비리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귀사와 거래에서 임직원으로부터 불공정 거래 및 부정·비리 행위를 제의받거나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윤리경영위원회(ethics@zinus.co.kr)로 알리겠습니다.
3. 불공정 거래 및 부정비리 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요청하는 관련된 자료 (불공정 거래 및 행위를 조사하는 데 필요한 서류, 금융자료 포함)의 제출 등 모든 협조를 다하겠습니다.
4. 당사는 귀사가 윤리경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귀사와의 거래에 있어 불공정 거래 및 부정·비리 행위의 근절이 귀사와 합리적인 조건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전제이며, 이러한 전제하에 귀사와 협력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이 서약서의 준수가 당사와 귀사 사이의 계약 및 협력관계의 중요 부분을 이룬다는 것을 확인하며, 당사가 이 서약을 위반할 경우 계약 해지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 서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당사가 보관하고, 1부는 귀사에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